

1. 들어가는 말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된 언론중재법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확대됐다. 이는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언론중재제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언론피해구제기관과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유럽 4개국의 언론자율규제 현황과 언론사의 움부즈만 사례에 대해 현지 언론학 교수들 및 언론관계자들과의 대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 유럽 4개국의 언론자율 규제와 움부즈만

1) 영국의 언론자율규제

영국 언론의 언론불만처리시스템은 오랫동안 언론평의회(Press Council)에서 담당했으나 1947년부터 1948년까지 조직이 재편성되었고, 1953년 이후 자율규제 시스템의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 1991년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 Press Complaints Commission)로 모든 업무가 통합되었는데, 독자의 권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언론평의회는 만족할 만한 협상과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장 기자와 언론 노조의 긴 협상이 있던 후 PCC를 통해 자율 규제라는 의미가 재정립된 것이다.

영국의 언론은 전통적으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념을 중시하며,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철저하게 자율 규제, 자율 등록 제도를 지켜왔다. PCC가 독자나 시청자를 대신해 언론사와 방송사로 부터 직접 사과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당위적 모순이 있다. PCC는 신문사들에게서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법정 분쟁으로 번지기 이전 불만 청구인과 해명을 해야 하는 피청구인(주로 언론사와 방송사)의 관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PCC의 역할이 제한된 자율 규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이다. 독자의 불만을 듣고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분명 언론의 책임이다. 그런데 언론사의 구조상 움부즈만 같은 제도를 모두 갖추기엔 무리가 있다. 때문에 영국에서는 PCC라는 기관이 위임을 받아 이를 중재하고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PCC의 영향력은 미미한 것에 그치고 있어, PCC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좀 더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를테면 악의적 보도를 한 기자에게는 더 강한 제재와 벌금을 선고하고, 언론의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별 언론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BBC는 대표적인 공영방송답게 오보 예방을 위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보도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편집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고참 기자들과 지속적으로 상의한다. 보도 가이드라인은 Accuracy, Impartiality, Politics & Public policy, War, Terror

& Emergency 등으로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BBC의 웹사이트에서는 최근의 여러 이슈, 중요한 불만이나 이슈가 제기될만한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한다. 'Visit Read' 나 에디터들의 블로그에는 BBC의 에디터들이 새로운 뉴스보도에서 나온 이슈들에 대한 설명을 올린다. 각각의 답변은 보통 6개월가량 게재된다. 답변에는 설명, 수정, 사과, 개선 등 적합한 조치들이 기술되며 이후 모든 불만 사항을 요약해 분기별로 ECU(Editorial Complaints Unit) 리포트로 게시한다.

불만 검토 리포트(Review Complaint Reports)에는 두 가지 내용이 실리는데 하나는 분기별로 모든 불만의 주제를 요약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ECU에 언급된 불만에 대한 요약이다. 후속 조치와 월간 리포트가 감독기관인 BBC 트러스트의 웹사이트에 게시되며, 답변은 각 부서별 담당자나 BBC 인포메이션에서 한다.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에 대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불만에 대해서는 BBC의 후속 조치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12주 이내에 처음 답변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면 된다.

BBC에서 방송하거나 게시한 특정한 아이템에 관한 것일 경우, 그것이 BBC의 편집 기준(Editorial Standards)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면 12주 이내 ECU에 연락하면 된다. 만약 ECU의 판정에 대해서 논하고 싶다면 8주 안에 BBC 트러스트의 편집기준위원회(BBC Trust's Editorial Standards Committee)에 어필하면 된다. BBC의 Complaints Management Board(CMB) 소속 고위임원들은 매월 회의를 통해 편집이나 관리 과정을 통해 접수된 불만사항으로부터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며 BBC 트러스트 역시 BBC를 모니터링하고 BBC의 불만 처리의 효용성에 관해 리포트한다. 불만처리 기간은 12주 내의 전송과 10일 이내에 회신을 목표로 한다.

가디언의 옴부즈만은 일주일에 한번씩 'Open Door' 섹션을 통해 직접 칼럼을 쓰며, 매일 'Corrections

and Clarifications' 섹션을 통해 정정 기사 보도를 내고 있다. 하루 평균 50~100건이 접수되며 대부분 이름 또는 사진 등의 정정을 요구하며 때에 따라서는 사실 여부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옴부즈만은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처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항목을 정리한 후 편집국에 사실 확인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답변한다. 주로 오프라인 신문 위주지만 인터넷 기사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옴부즈만은 금전적인 보상에 대한 업무는 담당하지 않고 있으며 편집자나 기자를 대신해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주 업무는 기사에 대한 오보 확인과 정정 처리이다.

일반적으로 영국 언론사들에는 6~7명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전문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가디언의 경우 현재 5명의 위원이 있다. 영국은 명예훼손에 대해 아주 엄격하다. 신문사와 독자의 불만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다. 옴부즈만의 행동강령이자 편집자와 기자의 규범인 "Code of Practice"는 PCC에 의해 지난 2007년 6월 수정되어, 2007년 8월 새롭게 발효됐다. 이 "Code of Practice"는 "가디언의 편집자 가이드라인(2002)"에 담겨 있으며, 익명의 정보원 인용, 표절, 출처, 취재 당시 취재인의 동의 여부 상황, 특정 사고나 범죄자에 관한 인종 보도 자제 등의 내용이 추가돼 있다.

2) 프랑스의 '사법부에 의한 구제'

프랑스에서는 미디어에 보도된 기사 내용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프랑스 언론이 겪어온 역사적 특수성 때문인데, 프랑스에서는 18세기 이후 근대적 신문이 처음 등장한 이래 정보의 내용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국가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이 벌어졌다. 당시에 국가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하여 사후 검열의 형태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통제했다.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난 이후, 언론 분야에서 정보의 자유에 대한 원칙이 확립된 이후, 이 분야에 있어서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형태로든 국가가 기사 내용에 개입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틀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러한 제도를 통해 저널리스트의 작업 내용물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심판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새롭게 확립된 것이다.

하지만 대혁명 이후 프랑스 사회는 19세기 내내 크나큰 혼란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언론 보도에 대하여 법적인 형태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반복했다. 1881년에 이르러 프랑스 정부는 마침내 언론자유에 관한 법률(Loi sur la liberté de la presse)을 공포하였는데, 이 법은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에서의 언론 자유에 관한 기본법으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 있다. 이 법의 근본 원리는 (법률 제1조에 언급된 것처럼) “모든 정보는 자유롭다” 그리고 “누구도 이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로서는 이러한 언론의 완전한 자유 속에서도 언론 보도로 인한 각종 피해가 여러 분야에서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이러한 피해를 구제받도록 한다는 원칙을 확립시켰다. 그래서 프랑스의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구제 제도의 근본 원칙을 흔히 “사법 원칙(principe juridique)”이라고 부른다.

결국 1881년 언론법의 원칙 속에는 “설사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 있어 실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다시 개입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는 모두의 근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만약 저널리스트가 실책을 저질렀다면, 그는 법과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기도 하다.

1940년부터 1944년까지 프랑스는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다. 나치 괴뢰 정권인 비시(Vichy) 정부는 이 기간 중 저널리스트 직업에 대한 명령을 제정한 바 있는데, 여기서 언론의 오보나 각종 오류들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검열)할 수 있는 기관이 다시 탄생했다. 종전 이후, 이 기관은 프랑스의 저널리스트들이나 프랑스 사회 모두에게 ‘점령’과 ‘나치 부역(Collaboration)’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종전 직후 이 기관이 폐지된 이후, 이와 유사한 기관을 다시 창설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금기시되었다.

언론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와 같은 사례에 대한 규정은 1993년 신설된 민법(Code Civile)의 제9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 존중의 권리”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따라서 “자신의 이름, 이미지, 목소리, 사생활, 명예 및 평판, 망각 및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었을 경우, 형사법정이 아닌 민사법정으로 향하며, 이에 대한 피해 구제는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재판은 해당 미디어가 소재한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행해진다. 프랑스의 언론사들은 80% 이상이 파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대부분의 언론 관련 재판들은 파리 지방법원에서 행해진다. 지방의 경우는 지방법원에서 여타 사건들과 같이 다루어지지만, 파리에 사는 언론 보도 관련 분쟁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리 지방법원 내에 언론 소송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Chambre de la presse)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 언론 관련 재판은 셀 수 없이 많고 그 대부분은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 침해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다.

윤리 위반에 대하여 아주 엄격한 법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곧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거의 모든 책임을 저널리스트에게 부과한다는 뜻으로, 실제 재

판 과정에서도 판사는 이와 같은 민법 조항을 대단히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래서 프랑스의 저널리스트들은 흔히 “이 법제 하에서는 저널리스트가 뉴스를 전달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한다.

프랑스의 이처럼 엄격한 사생활 보호 법제에 대해 언론사들은 지극히 적대적이다. 왜냐하면 현재 프랑스의 법제나 판례를 살펴보면, 언론의 거의 모든 기사들이 잠재적으로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으로 사법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또 상당 부분은 실제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외부 영역, 그러니까 정치권이나 대기업 그리고 시민사회(특히 각종 인권단체들)에서는 저널리즘 윤리 강령의 준종을 보장하기 위한, 즉 언론 보도의 윤리강령 위반이나 오보 혹은 언론 보도에 따른 독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가 바로 1971년 뮌헨 협약에 의해 채택된 유럽 차원의 저널리스트 윤리 강령을 보다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3) 독일의 언론자율규제

독일언론평의회는 언론관련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지난 1958년 페르시아 소라야 공주의 사생활이 언론에 보도된 뒤 중대한 외교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폐해에 관한 논란이 초래되자 연방정부는 「해외국빈 명예보호 강화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언론평의회가 정부보다 먼저 해당 보도를 낸 언론사에 ‘질책’ 결정을 내려서 언론 자체적인 정화과정을 주도함으로써 동법의 제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한편 1973년 언론평의회가 제정한 <언론강령>은 각종 언론관련 판결의 기준이 되고 있고 1976년에는 연방의회에서 「불만처리위원회 독립보장법」이 통과되어 독일언론평의회 위상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지난 1960년

에는 독일언론평의회가 제정한 언론법 표본이 현재의 주 언론법 모체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국가의 언론개입에 대해서 언론평의회를 비롯한 언론계가 강력한 비판의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언론자율규제 노력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언론사들은 언론강령에 명시된 저널리즘의 실천규범에 따른 언론평의회 결정사항을 비교적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언론평의회에 한계가 되고 있다.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의무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자율규제는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빨 없는 사자’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자율규제만으로는 황색 대중저널리즘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언론자율을 지키려다 보니 법적 구속력 부재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에, 자율규제의 한계는 오히려 언론평의회 존재근거가 된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지난 1956년 11월 26일 설립된 언론자율규제기구이다. 당시 아데나워 보수정권이 국가기구로서의 언론규제기관을 설립하려하자 주요 언론단체가 규합하여 국가개입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설립한 순수 언론자율규제기관이다. 언론평의회 설립단체는 신문발행인협회(BDZV)와 잡지발행인협회(VDZ), 독일기자협회(DJV), 독일언론노조(DJU)이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운영위원회와 위원총회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위원회는 이들 4개 단체가 각각 2인씩 파견하여 구성되어 있고 위원총회는 각 단체에서 7인이 파견되어 총 2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총회는 불만처리위원회 위원 6인을 임명한다(임기 2년). 나아가 위원총회에서 위원 5인과 독일연방 무료광고지협회가 파견한 1인으로 이루어진 편집국 정보보호 불만처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지난 2001년 신설된 편집국 정보보호 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사가 취재과정에서 획득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 불만처리위원회는 당시 연방정부가 「연방개인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을 개정하면서 언론사 편집국의 개인정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될 경우 이는 언론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의 언론개입 범위는 크게 축소됐다.

한편 언론평의회 사무처에는 6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연간 예산은 약 70만 유로이고, 이 가운데 약 18만 유로가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불만 접수 후 처리방식은 ‘암시’, ‘비난’, ‘질책’ 3단계로 되어있다. ‘암시’는 언론강령을 가볍게 어긴 경우에 해당하는 조치로, 해당 언론사는 언론평의회로부터 ‘암시’를 받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도 된다. ‘비난’은 언론강령을 ‘암시’ 수준보다 심하게 어긴 경우이지만, 역시 해당 언론사는 이를 보도를 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언론평의회는 다만 해당 언론사에 ‘비난’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책’은 언론평의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해당 언론사는 ‘질책’ 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보도해야한다.

독일언론평의회는 지난 1973년 최초로 언론강령을 제정했고 이는 지난 2001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일부 언론사는 언론평의회 업무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예컨대 지난 50년대 말 시사주간 슈테른지는 표현과 비판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언론평의회를 함부르크 법원에 제소했었다. 당시 법원은 언론평의회 활동이 독일기본법 정신을 준수하는 합헌적인 기구라고 판시해 언론평의회 활동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편 독일언론평의회는 ‘유럽 독립언론평의회 연맹’(Alliance of Independent Press Council of Europe) 창립을 주도했다. ‘유럽 독립언론평의회 연맹’은 지난 1999년 6월 영국에서 창립식을 갖고 유럽 각국의 언론평의회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특

히 동부와 중부 유럽 국가에서 언론평의회가 신설되고 있어서 이 기구가 국제적인 언론평의회 협력기구로 성장하고 있다.

4) 오스트리아의 언론자율규제

오스트리아언론평의회는 국가권력의 언론개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지난 1961년 설립된 언론자율규제기관이다. 언론평의회는 오스트리아신문협회와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잡지협회, 기자·작가 공동협회 등이 함께 참여하면서 총 4개 주요 언론단체가 공동 설립했다. 언론평의회는 신문협회와 언론노조에서 각각 10인, 기자·작가 공동협회와 잡지협회에서 각각 2인이 지원되어 총 24인의 명예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언론평의회 의장은 신문협회와 언론노조의 대표가 각각 일 년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맡아 왔다.

언론평의회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언론에 대한 국가개입을 방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언론 스스로 정화를 통해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 신문·잡지 등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신문에 대한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감독해 왔었다. 특히 언론 보도나 오보에 의해 피해를 입거나 개인 명예가 훼손된 경우, 나아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따른 불만을 해결하는 것이다. 언론평의회가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불만을 초래한 언론보도를 낸 해당 언론사와 불만신청자를 각각 불러서 입장 표명을 통해 중재 기능을 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언론평의회는 현재 사실상 해체된 상태이다. 그동안 언론평의회를 재건하려는 작업이 있었으나 당분간은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2001년 12월 신문협회가 언론평의회를 공식적으로 탈퇴하면서 발생했다. 신문협회는 당시 언론노조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가는 데 대해서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언론노조의 성격이 강화되면서 지나

치게 사회개혁적인 프로그램들이 논의되는 데 대한 반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신문협회는 언론평의회의 역할이 신문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신문사가 언론평의회의 주도세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당시 신문협회는 언론평의회의 규제 수단이 너무나 약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강화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언론사가 언론강령을 훼손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언론평의회의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평의회 사태로 인해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언론자율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요약해보면 크게 두 개의 범주로 나뉜다. 신문윤리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주장과 규제 법률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새 규제기관을 커뮤니케이션청 산하에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아직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점증하는 신문자본집중의 추세에 따라 신문시장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서 언론윤리가 훼손되는 경향이 짙어짐에 따라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밖에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언론불만위원회 내지는 시민언론중재위원회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언론자율규제기관의 부재 현상이 점차 막을 내리고 새로운 형태의 자율규제기관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새로운 언론자율규제포럼이 출범해 시범업무를 개시하고 있다. 독자변호인단이라는 이 단체는 이름과는 달리 법률적 행위를 통한 규제는 행사하지 않고 자율규제 차원에서 언론사의 언론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언론강령을 위반한 언론사에 이를 통보하고 또 언론보도 불만을 접수하여 해당 언론사와 불만접수자의 중재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오랜 동안 언론계에 몸담은 현직 언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국가의 개입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신문협회는 언론노조에 반쪽 언론평의회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포기하라는 주장을 전달하고 있고, 또 신문협회도 단순히 주도권에 대한 향수로 인해 파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듣고 있음을 감안하면, 당분간 독자변호인단의 활동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3. 맺음말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영국은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여 국가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철저하게 자율 규제, 자율 등록 제도를 지켜오고 있다. 프랑스는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규제하는 별도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법 앞에서 저널리스트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가 개입하기 전 언론단체 스스로가 언론평의회를 구성하여 자율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언론강령을 거부하는 대형언론사들과 그 밖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언론평의회가 해체된 상태이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언론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 실무연수에서 만난 유럽의 언론학 교수들과 언론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 시행으로 다양한 형태의 언론피해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언론중재제도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법원이 아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이례적으로 받아들였다.

언론과 관련된 피해구제 방식은 각 나라의 정치·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여러 나라의 각기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성장해 온 다양한 언론피해구제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